

# 입찰공고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건명	입찰등록 마감일시	입찰일시	장소
RISE사업추진단 클린에너지전공 VDI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	2026. 7. 16.(목) 10:30	2026. 7. 16.(목) 11:00	재무처 구매과 (S01-307호)

## 2.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(지역), 총액입찰

## 3. 입찰참가자격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- 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
- 다.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필한 업체
- 라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(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)로 등록된 업체
- 마.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자로서, 해당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
- 바. VDI가상화 솔루션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
- 사. 상기 '가~바'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

## 4. 기초금액 : 84,665,000원 ※부가세, 인지세 포함

## 5.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. 2. 28.까지

## 6. 입찰보증금

- 가. 입찰 예정금액의 5/100이상의 이행(입찰)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대학교 재무처 구매과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찰 및 낙찰되었을 경우는 무효와 동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됩니다.

## 7. 낙찰자 결정 : 우리대학교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

## 8. 입찰무효

- 가. 우리대학교 재무회계규정 제52조 제3항 및 제56조에 해당되는 경우
- 나.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찰무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

## 9.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

- 가. 입찰참가신청서 1부(우리대학교 소정양식)
- 나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"원본과 같음"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)
- 다. 이행(입찰)보증보험증권(입찰 예정금액의 5/100이상)
  - 보증기간은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후
  - 피보험자: 603-82-01274 동아대학교
  - 약관출력 및 제출
- 라. 인감증명서 1부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)
- 마. 사용인감계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바. 인감 도장(사용인감계 지참 시 사용 인감 도장)
- 사.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("원본과 같음"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)
- 아. 입찰참가자격 '바'를 확인을 위한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
- 자.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("원본과 같음"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)
- 차.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카.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사본 1부.("원본과 같음"을 명기하고 날인한 사본) 1부.

## 10. 기타사항

- 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**입찰유의서**, **과업지시서**, **용역계약일반조건**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열람,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
- 나. 입찰등록 마감 시 이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 마감이전 동아대학교 협력업체를 등록(공고문 하단의 협력업체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/ <https://dex.donga.ac.kr/>) 하시고 입찰관리-입찰공고현황에서 입찰등록 후, 입찰등록 마감시 이전까지 **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3층 재무처(S01-0307호)**로 입찰서류를 갖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제4조)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마. 기타 과업에 관한 문의는 우리대학교 RISE사업추진단 김주연(051-200-5851), 입찰 관련 문의는 재무처 구매과 조규동(051-200-6712)로 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8일

동 아 대 학 교 재 무 처 장